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포함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15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포함	3
2. 이중보상·지원 금지규정의 명확화	6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u>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u>),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 ----- ----- ----- ----- ----- ----- ----- <u>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u>이상수온(異常水溫)</u>,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 13. (생략)	3. ----- ----- -----<u>이</u> <u>상수온(異常水溫)</u>, 유해야생동물----- ----- ----- ----- -----. 4. ~ 13.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202개 어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¹⁾, 야생동물로 인한 수산양식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이상수온(異常水溫) 등 다양한 원인을 규정하면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²⁾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

1) 어민 피해신고 기준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시켜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미비로 인해 어업피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 같은 법상 농업재해의 개념과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의 개념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피해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해당 유해야생동물의 범위³⁾에는 민물가마우지도 포함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도 농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현행법상 농업재해, 어업재해의 개념 비교]

농업재해	어업재해	개정안에 따른 어업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u>유해야생동물</u> ,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현행 어업재해의 개념 + <u>유해야생동물</u> 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는 [참고자료] 참조

3) [참고자료] 참조

가. 개정안의 요지

-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6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제1항은 국가 등이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 더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비해 불리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그런데 현실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전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를 이 법에 따른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같은 단서 후단에서는 다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농·어가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 전·후단의 내용이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현재 재난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서는 ①현행법에 따른 재난지원금(보험 미가입자 대상), ②「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금(보험 가입자 대상) 등을 지급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어가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9호다목에 따른 영농자금 이자액 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의 간접지원도 일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등 혼선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같이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재난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개정안 조문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u>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해야생동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